

『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『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(이하 “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”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외화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4조 가능통화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 가능통화는 USD, EUR, JPY, GBP, CHF, AUD, CAD, NZD로 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,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365일 이내로 하며, 일단위로 지정합니다.
단, 공휴일을 만기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적용이율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적용이율은 영업점 게시이율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8조 통장발행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기명 통장식으로 발행합니다.

제9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만기 후 이자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 예금자 보호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제12조 관련법규의 준용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,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3조 기타

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
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기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